성인여성 대상 성 권리 인식 도구개발 및 적용

김혜워¹ · 임은숙² · 김남선¹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1, 목포과학대학 간호과 교수2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exual Rights Awareness Scale for Female Adults

Kim. Hae Won¹ · Im. Eun Sook² · Kim. Nam Sun¹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Science College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exual rights awareness scale for female adults and to further examine the differences after educational sessions for sexual rights awareness with female adults. Methods: Convenient sampling was employed to recruit 152 participants.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explore adult females' understanding of sexual rights awareness. In the next phase, education was provided over 3 consecutive sessions to 28 female university students.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were performed in order to tes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ducational sessions. The Wilcoxon rank test was us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pretesting of sexual rights awareness knowledge and post testing after educational sessions was provided. Results: After conducting factor analysis, 5 factors explained 63.3% of the total variance, namely: I) sexuality education, II) prejudice & biasaberration, III) sexual satisfaction, IV) safe & equal sexuality, and V) sexual autonomy. A Cronbach's alpha of 17 items was 0.80. After the education session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sexual rights awareness. Conclusion: The Sexual rights awareness questionnaire is acceptable as a tool for measuring the level of education in studies. Future research should aim at conducting comparison studies of sexual rights awareness between sexes and cultural differences with larger populations which will further help to develop and to strengthen the rigor with in methodologies.

Key Words: Sexuality, Reproductive rights, Sex education

서

1. 연구의 필요성

세계건강기구에서는 2002년에 이미 성 권리를 "성 건강 관련 인간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조약이나 협약 등에서 이미 인식되어 있었던 성 권리를 인권의 영역 속에 안전하게 위치시키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의 권리이

며, 강압으로 부터의 자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 등으 로 설명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국내 에서도 2003년 대한 성학회가 창립되면서 10개의 성 권리 의 중요성을 표명하는 서울 선언이 제시됨으로써 성 건강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 세계성학회에서 발표한 세기의 성 건강(sexual health for the millenium) 보고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긴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기의 발전 목표(Mil-

주요어:성, 성권리, 성교육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Nam Sun,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522 Naegok-dong, Gangreung 210-701, Korea. Tel: 82-33-649-7612, Fax: 82-33-649-7620, E-mail: nskim@kd.ac.kr

투고일: 2009년 10월 13일 / 1차심사완료일: 2010년 1월 19일, 2차심사완료일: 2010년 2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3일

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제안하였는데, 성 건강의 증진이 바로 세기의 발전 목표(MDGs) 성취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성 건강 을 8개의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는데, 첫 번째 성 건강 차원으 로 선언된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성 권리의 인식, 증 진, 확인과 보호였다. 즉 성 권리는 기본 인권의 통합적 요소 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어서 성 건강은 모든 사람의 성 권리 없이는 획득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 고 간주된다(World Association for Sexual Health [WAS], 2008).

성 권리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율성, 권위와 타 인의 동등한 권리를 인식하였을 때 만 가능하며, 성윤리는 파트너 쉽에 기초하여 성교육과 생식건강 서비스에 통합됨 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성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 다고 한다(Dixon-Mueller, Germain, Fredrick, & Bourne, 2009). 즉, 성 권리란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성 건강의 이해 와 증진을 위해서도 성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 성 권리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누구에 게나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성교육의 기초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다양한 성교육 영역과 생식건강 서비스 현장에 서 성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려는 성교육이 요구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 현장에서 성 권리 인식은 논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 권리 관련 연구들은 많지 않다. 예 를 들면, 여성들의 생식 권리와 성 권리에 대한 견해(Petchesky & Judd, 1998),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성적 자율성의 중 요성(Rickert, Sanghvi, & Wiemann, 2002), 장애여성 성 권 리의 여성주의적 입장 해석(Lee, 2005)등을 살펴볼 때 성 권 리를 특히 취약계층과 소수 집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중요 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보편적인 성 권리가 이 미 존중되고 있다는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 특히 여성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성 권리 인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성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성 건강 이슈를 다양하게 바라 보는 사회문화적 관점이 필요하며, 성 권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WAS, 2008). Edwards와 Coleman (2004) 역시 성 권리는 성 건강 성취를 위한 조건이라 는 것을 강조하였고, 성 건강의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성 건강 개념 에서 성 권리의 증진은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개념화되고

있으나 성 권리 인식을 구체화하여 성 건강의 지표로서 어 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요약하면, 성 권리는 성 건강의 핵심개념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개념적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을 뿐 국내외 연구에서 성 건강의 주요 지표로서 제기되거나 구체적으로 조작화되 어 측정된 바 없다. 성 권리 인식을 어느 시점에 교육에 적용 하느냐의 견해는 연구자마다 다를 것이지만 본 연구자는 성 교육의 효율성과 파급효과 면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대상 자는 바로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성인 집단으로 간주하였 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장 영향력있는 잠재적 실제적인 성 적 활동 집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성 권리에 대한 연구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에서 성 건강의 주요개념으로서 성 권리의 중요성을 고취하 고 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하여 성 건강의 주요 지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성 학회에서 발표되었 던 성 권리 선언문을 바탕으로 일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권리 인식 도구를 계량화한 후 이들의 성 권리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여대생에게 성 권리 인식 교육 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성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타당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성 권리 인식을 계량화하 는 도구를 개발하고, 그들의 성 권리 인식 수준을 파악하며, 나아가 성 권리 인식교육을 일부 여대생에게 시험적으로 적 용하여 교육 전후 성 권리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성 권리 선언문에 기초한 성 권리 인식 도구를 개 발하여 도구의 구성 요인을 확인하고 이들의 성 권리 인식 수준을 파악한다.
- 일부 여대생에게 성 권리 인식을 성교육에 적용하여 교 육 전후 성 권리 인식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성 권리 인식: 성 권리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기본권이 며 성 건강의 핵심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 권리 인식 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17개 문항의 성 권리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문헌에 기초한 성 권리 인식 도구를 개발하고 시험적으로 도구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도구개발

성 권리 인식 도구 개발의 단계는 예비 문항 구성 단계, 내용 타당도 검증, 예비조사를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 시범적으로 실제 성교육에 적용하였다.

1) 예비 문항 구성

현재까지 성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문헌에서 제시된 바 없지만, 국내외에서 발표된 성 권리 선언문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성 권리 선언의 내용은 이미 국내외 성 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것이며, 또 학회에서 이미 합의를 이룬 내용이었기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성 권리 도구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기존의 성 권리 선언문으로부터 성 권리 인식 문항들을 연역적으로 추출하는 방법도 인터뷰나 질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자료들만큼 신 빙성이 있고 보다 효율적인 도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성 권리 문항의 기초는 제 13차 세계 성 학회가 개최되었 던 1997년 발렌시아에서 최초로 채택된 9개의 성 권리 선언 문인데(Korean Association for Sexology, 2006), 이 선언은 1999년 홍콩에서 열린 제 14차 세계 성 학회에서 11개의 성 권리로 개정, 선언되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WAS, 2008). 이후 대한성학회(2003)가 발표한 10개의 서 울선언문을 포함하여 3개의 성 권리 선언문을 비교하였다. 3개의 선언문에서 제시된 성 권리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 후 각 문항들의 추상성과 구체적 수준을 비교하고 조절 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결과 총 20개의 최종문항을 정리하였다.

2) 내용 타당도

5인의 성 건강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2인, 성 상담교육 자 1인, 여성건강 간호학 전공 교수 2인)에게 20개 문항이 성 권리 문항으로서 적절한지를 의뢰한 결과 유사성에 기초 한 문항(생물학적 남여, 사회적 남여 차별)을 통합하고, 구 체성이 결여된 문항(인간은 성적 행복을 추구할 권리)과 애정이 결핍된 성행동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문항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어 3문항을 제외한 총 17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여성건강 간호학 교수 2인, 산부인과 의사 2인 및 성상담교육자 2인 및 박사 과정 학생 3인에게 각 문항의 타당성을 4점 척도로 평점토록 한 결과 17개 문항 전부의 타당도지수 CVI는 0.8 이상이었다.

3) 예비 조사

17개의 완성 문항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지, 수정이 필요한 문항이 있는지를 10명의 간호학생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다.

3. 연구대상

실제 이 도구가 사용될 근접 모집단은 성인 집단이지만 본 연구에서 표적 집단은 일차적으로 성인여성이며, 편의상 일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여성으로 국한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연구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여성 중에서 장차 성 교육을 담당할 예비 성교육(상담)자와 간호학 전공 대학생 을 포함하였고 또 타 전공 여자 대학생도 포함시켜 최소한 대상자 범위를 넓히도록 노력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연구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람들로 임의 표출하였다. 최종분석에 이용된 대 상자는 152명이었다. 도구개발에 필요한 요인 분석에 요구 되는 대상자 수는 문항의 4~5배가 적당하다는 근거에 비추 어 볼 때 17 문항의 5배인 85명 이상을 충족하여 적절함을 인정할 수 있다.

4. 연구도구

성 권리 인식: 성 권리 인식이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성 건강의 핵심 요소인 성 권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 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 권리는 17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성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여(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상당히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점수가 많을수록 성 권리 인식이 높다고 해석하 였다. 도구의 최소값은 17점이고 최대값은 68점이다. 구체 적인 성 권리 측정 내용은 어느 상황에서든 자유로울 권리, 개인의 몸을 지킬 권리, 성적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차별로부터 평등할 권리, 성적 쾌락의 권리, 성적 의사소통

의 권리,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출산하지 않을 권리, 출산의무를 다하기 위한 선택권리, 성적 정보를 얻을 권리,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성 관련 전문적 관리를 받을 권 리, 이용이나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 을 권리, 동성애의 성적 동등권리, 및 자위행위의 격려 등이 다

5. 윤리적 고려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공지한 후 연구자 정보와 연구 관련 제반 정보가 담긴 설명 문을 배부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6.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소재한 G시 소재 대학과 성교육 전 문기관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 고 회수하였다. 대상자는 간호학 전공, 타 전공 대학생, 성 상담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응답 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전체 배부된 설문지 160부 중에서 분석에 이용한 유효 설문지는 152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고 자 료수집 방법은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 형식이었다.

7.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12.0 (Chicago, IL)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처리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는 요인분석,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성 권리 인식 문항 의 서술적 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성 권리 인 식교육 전후 성 권리 인식의 차이는 Wilcoxon's signed rank test로 확인하였다. 모든 검증에서 유의수준은 .05 이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는 전체 152명으로 모두 여성이었으며, 이들 의 구성은 간호학 전공 대학생 68명, 타 전공 대학생 62명 및 성 상담 교육자 2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4.0±8.2세,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49세까지였다

1.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도구의 구성 타당성과 내적 구조를 확인하기에 앞서 요인 분석의 기본가정인 정규 분포성을 검정하였다. Kolmogorov-Smirov test 결과 통계량(z)은 .88 (p=.428), 정규산포도에 서는 관찰치들이 정규산포도에 대각선을 따르는 직선 형태 를 보였으며, 선형분리 정규산포도에서는 잔차들이 0을 기 준으로 무작위 분포를 보임으로써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확 인하였다. 다음 단계로 요인분석 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 하고자 Kaiser-Meyer-Olkin의 표준적합도를 구한결과 .741 로 Kim (2007)의 기준으로 해석할 때 만족할만한 수준이었 고, Bartlet 구형성 검정결과 x^2 값 역시 661.78 (p < .001)로 적합하였다.

요인분석과정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 요인회전은 Varimax 방식을 적용하여 Eigen value 1.0 이상, scree검사 를 고려하여 요인 수를 분석한 결과 총 5개 요인이 추출되었 고 이들의 총 설명 변량은 63.3%로 나타났는데, 각 요인 별 설명변량은 1요인 25.8%, 2요인은 11.9%, 3요인은 10.3%, 4요인은 8.9%, 그리고 5요인은 6.3%를 각각 설명하였다 (Table 1).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 계수로 확인하였을 때 .80으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5개요인 별 Cronbach's α계수는 각각 .74, .70, .70, .68, .67이었다.

2. 요인의 특성과 명명

제1요인에는 출산의무를 위한 선택권리,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성 정보를 얻을 권리, 성 관련 건강문제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권리, 및 일생동안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 리의 총 4문항이 포함되어, 요인의 특성을 성 교육 권리 (right of sexuality education)로 명명하였다. 제2요인에는 동성애가 이성애와 차별받지 않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 출산하지 않을 권리, 자위행위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 녕의 근원이므로 격려되어야 할 권리, 어린이나 노인들이 성인들과 차별받지 않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 신체적, 정 신적 장애인이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항의 총 5문 항이 포함되었기에, 요인의 특성을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

Table 1.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Sexual Rights Awareness

(N=152)

Factor (No of item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
I (4)	· Choice for reproductive obligation	.73	4.38	25.8
	· Sexual information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73		
	· Professional service to sexuality relational health matter	.72		
	·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through the whole life	.72		
II (5)	· Do not discriminate homosexuality from heterosexuality in sexuality	.77	2.03	37.7
	· Do not reproduce	.74		
	· Masturbation is encouraged as a source of physical, psychological	.67		
	and emotional wellbeing	.52		
	· Do not discriminate physically, mentally disabled from non-disabled in sexuality	.47		
	$\boldsymbol{\cdot}$ Do not discriminate children or geriatrics from adults in sexuality			
III (3)	Sexual communication or sexual expression	.75	1.76	48.0
	· Sexual pleasure or enjoyment	.69		
	· Free from social responsibility to force sexual customs	.60		
IV (3)	· Do not be manipulated or exploited sexually	.81	1.52	60.0
	· Individual body safe	.68		
	· Equivalent to biological sex and social gender role	.65		
V (2)	· Sexual freedom in any situation	.83	1.08	63.3
	· Protection of sexual privacy from others	.67		

(prejudice & bias aberration)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에는 성적 의사소통이나 표현의 권리, 성적 쾌락을 누릴 권리, 성적 책임을 강요하는 사회적 관습에서 자유로울 권리의 3 개 문항이 포함되어, 요인의 특성을 성 만족 권리(right of sexual satisfaction)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성이 이용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몸을 지킬 권리,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역할이 동등할 권리의 3문항이 포함되어, 이 요인의 특성을 안전과 평등의 성권리(right of safe & equal sexuality)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제5요인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성적으로 자유로울 권리, 성적 사생활을 남으로부터 보호할 권리 2문항이 포함되어, 요인의 특성을 성적 자율성의 권리(right of sexual autonomy)로 명명하였다.

3. 대상자의 성 권리 인식 수준

성 권리 인식이 높았던 문항들로는 개인의 성이 이용당하 거나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3.86±0.37), 안전하게 몸을 지 킬 권리(3.80±0.46),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역할이 동등 할 권리(3.72±0.47)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성 권리 인식 이 낮았던 문항들로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성인과 차별받지 않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2.49±0.92),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2.70 ± 0.92), 동성애가 이성애와 차별받지 않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2.70 ± 0.99), 성에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제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2.75 ± 0.89)등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4. 성 교육 전후 성 권리 인식의 차이비교

전체 대상자 중 일부 여대생 28명을 대상으로 성 권리 인식 교육 후 성 권리 인식이 변화하는 지 확인하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19.9±1.4세로 의학, 간호학, 및 보건학을 제외한 타 전공의 미혼 여학생들이었다. 성 교육 시간 및 횟수는총 3회로 주당 1회 50분씩 3주에 걸쳐 전체 150분으로 구성되었고, 구성 내용은 성의 포괄적 개념과 생물학적 사회적성의 개념, 성교육의 의미,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성 권리 역사, 성 건강, 성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에 대한 사회 문화 제도적 영향, 성적 차별과 성적 편견에 대한 것이었다. 교육은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방법론은 유인물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의, 사례탐구 및 토론과 질의로 구성되었다.

성 권리 인식 교육 결과,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성 권리 인식의 전체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Z=-2.66, p= .008), 성 권리 요인 중에서는 제2요인인 편견에서 벗어날

Table 2. Ranks of Sexual Right Awareness Related Items

No	Items of sexual right awareness	M±SD
13	Do not be manipulated or exploited sexually	3.86 ± 0.37
2	Individual body safe	3.80 ± 0.46
4	Equivalent to biological sex and social gender role	3.72 ± 0.47
3	Protection of sexual privacy from others	3.61 ± 0.71
12	Professional service to sexuality relational health matter	3.56 ± 0.63
14	Do not discriminate physically, mentally disabled from non-disabled in sexuality	3.56 ± 0.76
11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through the whole life	3.56 ± 0.61
10	Sexual information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3.40 ± 0.77
16	Masturbation is encouraged as a source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3.39 ± 0.78
6	Sexual communication or sexual expression	3.21 ± 0.74
1	Sexual freedom in any situation	3.21 ± 0.76
5	Sexual pleasure or enjoyment	3.11 ± 0.72
9	Choice for reproductive obligation	2.86 ± 0.82
7	Free from social responsibility to force sexual customs	2.75 ± 0.89
15	Do not discriminate homosexuality from heterosexuality in sexuality	2.70 ± 0.99
8	Do not reproduce	2.70 ± 0.92
17	Do not discriminate children or geriatrics from adults in sexuality	2.49 ± 0.92
	Total	54.8±6.38

권리(Z=-2.74, p=.006), 제5요인인 성적 자율성 권리(Z= -2.43, p=.015)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유의한 변화를 보 였던 성 권리인식 문항들로는 동성애가 이성애와 차별받지 않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Z=-2.04, p=.042), 출산하지 않 을 권리(Z=-2.30, p=.022), 어린이와 노인들이 성인과 차별 받지 않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Z=-1.84, p=.065), 성적 의사소통이나 정서적 성적 표현의 권리(Z=-2.31, p=.021), 개인의 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로울 권리(Z=-2.35, p= .019)였다(Table 3).

의 녿

본 연구는 성 권리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성 관련 교 육과 연구에서 성 권리 인식의 적용을 제기하고자 시도되었 다. 성 권리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자유, 위엄, 및 평등 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 건강 역시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성 권리들을 존중하고 실행함을 인식하는 결과로 간주되고 있 다(WAS, 1999). 이와 같이 성 권리를 연령, 성별, 종교, 문 화, 장애, 성적 지향성 등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 권리라는 전제를 인정한다면, 성 권리 인식 은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성교육 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 당연한 전제로 만 받아들여진다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자는 성교육에서 필수적인 기초가 무엇인지를 되돌 아보게 되면서 성 권리란 성 건강 인식의 뿌리인 동시에 성 교육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성교육의 총론이어야 한 다는 견해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성적 소수자, 및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교육 대상 자에게 그리고 모든 성교육의 세부 주제를 다루기 전 도입 부분에서 성 권리 인식을 점검하고 개인과 집단의 편견과 오해를 줄이며 성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여성을 대상으로 성 권리 인 식에 대한 양적 접근의 연구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성 권리를 계량화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앞으로 성 권리 연구를 확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성 권리 인식을 대학생의 성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근 거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 우 선 성 권리 문항구성이 학회에서 발표된 선언문에 크게 의 존하고 있어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다른 문헌이 나 질적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연구대상도 일

Table 3. Differences on Sexual Right Awareness Between Pre and Post Education

(N=28)

Factor (No of items)	Item	Pretest M±SD	Posttest M±SD	- Z	р
	· Choice for reproductive obligation	3.04 ± 0.74	3.32 ± 0.61	-1.80	.073
	Sexual information based on scientific knowledge	3.64 ± 0.68	3.61 ± 0.50	-5.34	.593
	· Professional service to sexuality relational health matter	3.75 ± 0.44	3.71 ± 0.46	-3.33	.739
	·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through the whole life	3.79 ± 0.42	3.64 ± 0.48	-1.63	.102
	Subtotal	14.21 ± 1.64	14.29 ± 1.74	-0.11	.912
II (5)	· Do not discriminate homosexuality from heterosexuality in sexuality	2.46 ± 1.07	2.93±1.15	-2.04	.042
	· Do not reproduce	2.57 ± 0.96	2.96 ± 0.96	-2.30	.022
	· Masturbation is encouraged as a source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3.21 ± 0.92	3.50 ± 0.64	-1.24	.216
	Do not discriminate physically, mentally disabled from non-disabled in sexuality	3.54 ± 0.84	3.75±0.52	975	.329
	· Do not discriminate children or geriatrics from adults in sexuality	2.39 ± 1.10	2.82 ± 0.98	-1.84	.065
	Subtotal	14.18 ± 3.49	15.96 ± 2.56	-2.74	.006
III (3)	Sexual communication or sexual expression	3.29 ± 0.76	3.61 ± 0.63	-2.31	.021
	Sexual pleasure or enjoyment	3.29 ± 0.71	3.50 ± 0.69	-1.60	.109
	Free from social responsibility to force sexual customs	3.00 ± 0.92	3.26 ± 0.90	-1.83	.166
	Subtotal	9.46 ± 1.97	10.39 ± 1.91	-2.38	.180
IV (3)	· Do not be manipulated or exploited sexually	3.86 ± 0.36	3.82±0.39	-0.45	.655
	· Individual body safe	3.32 ± 0.72	3.86 ± 0.36	-0.58	.564
	· Equivalent to biological sex and social gender role	3.75 ± 0.44	3.75 ± 0.44	0.00	1.00
	Subtotal	11.43 ± 0.88	11.43 ± 0.96	-0.19	.862
V (2)	· Sexual freedom in any situation	3.32 ± 0.72	3.71±0.53	-2.35	.019
	Protection of sexual privacy from others	3.64 ± 0.73	3.85 ± 0.36	-1.40	.161
	Subtotal	6.96 ± 1.32	7.57 ± 0.79	-2.43	.015
	Total	55.25±5.97	59.64±5.53	-2.66	.008

부 여성들을 편의 표출하였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와 제한점은 성 권리에 대한 학술적 문헌이 부재하였던 연구기반, 그리고 연구방법론에서 질적, 양적 방법론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triangulation 기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분명하게양적 연구 방법론만에 의존하였던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수 있는데, 향후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 권리가 무엇인지 그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사실 2002년 국내에서 발표된 성 권리 선언문 역시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기 보다는 성 건강전문가들의 세계 성 권리 선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제청된 것이어서 성 권리 인식에 대한 연령별, 성별에 따른다양한 반응과 문화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계속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제한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 권리 인식은 도구로서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과학분야에서 200명 이하의 표본일 때 총 분산의 60% 이상인 요인을 선정하고 적재량이 .35 이상일 때 유의하다는 Kim (2007)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5개 요인의 설명력 63.3%, 요인 적재량 범위는 .47~.83을 보이므로 이는 통계학적 타 당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5 요인에 대해 성 교육 권리,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 성 만족의 권리, 안전하고 동등한 성 권리, 성적 자율성 권리로 명명하였는데, 이 요인 들의 특성은 Dixon-Mueller 등(2009)이 모든 성교육에서 기대되는 규범적 윤리적 안내 지침으로 제안한 다음의 5가 지 개념화; 1) 성관계와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2) 성적 표현 과 성적 즐거움 3) 파트너와 협력할 권리 4) 성적 유해성과 보호 권리 5) 성 건강, 교육 및 서비스 권리 등과 유사성이 있다. 아마도 성 교육 윤리는 모든 사람의 성 권리를 보호한 다는 전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성 윤리와 성 권리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할 필요성도 암시하 고 있다. 또한 5개 요인 중에서 성 만족의 권리를 제외한 4 개 요인들은 1996년 국제 가족계획 협회에서 제정한 여성 의 12가지 성 생식 권리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었 다(Research Forum of the Women's Health Nursing Curriculum, 2006). 이를 살펴보면 4개 요인들은 남여의 보편 적인 성 권리로 수용되는 반면 성 만족의 권리는 이전 여성 의 성권리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성 만족 권리는 남여 모두에게 중요한 성 권리이므로 실 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성 만족 권리를 얼마 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일부 여성들이 인식한 성 권리 수준은 도구 의 최대값 68점에 비교하면 54.85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성 권리 인식이 비교적 낮았던 문항들 중에는 출 산 의무를 선택할 권리, 출산 하지 않을 권리, 성적 관습을 강요하는 사회적 제도로 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동성애가 이성애와 차별받지 않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 어린이나 노인들이 성인과 차별받지 않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 등 이었는데, 이들은 성교육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추가분석으로 집단 간 성 권리 인식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지만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대표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일부 여성들이 인식인하였지만 집단 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는 이들 이 속해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을 갖춘 여성을 대상 으로 한 반복연구가 요구되며, 여성과 남성 집단 간 성 권리 인식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는 대조군도 없이 일부 여대생에게 실험적 수준의 성 권리에 대한 인식 교육을 적용하였지만 교육 후 성 권리 인식 점수가 높아졌고, 요인 중에서도 편견에서 자 유로울 권리, 성적 자율성 권리가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 를 바탕으로 성 권리 인식에 대한 성 교육이 필요하며, 성 교육 연구에서 성 권리 인식을 측정변수로 평가해야 할 근 거를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출산하지 않을 권리, 어린이나 노인들이 성인과 차별받지 않고 성적 으로 동등할 권리, 그리고 동성애가 이성애와 차별받지 않 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연 구결과는 그 동안 우리사회가 감추고 논의하지 않았거나 방관하고 있었던 성 권리들이 성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었던 긍정적 기회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Berer (2004)는 국제적 전쟁 또는

범죄에서 성적 고문, 성 업소 종사자에 대한 차별 및 이들에 대한 폭력과 강압, 규제 하에 있는 성 관련 연구의 자유, 젊 은 사람을 위한 성 정보, 건강과 피임 서비스, 그리고 성관 런 정신 건강 문제의 영향 인지 등과 같은 성적 차별에 대해 반응할 것과 차별이나 억압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성 권리 증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지적된 내용은 향 후 우리사회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성 건강과 성적 차별을 점검할 때 주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 권리 인식을 다룬 이번 연구를 계기로 향후 성 권리 인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성 권리 인식을 증진시 키는 성교육 방법론의 개발을 기대한다.

성 권리 인식은 연구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성교육의 전제, 총론, 또는 각론으로 그 범위와 수준이 다르게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새롭게 성 건강 증진 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 권리 인식의 중요 성을 제기하고 성 교육과 연구에서 성 권리 인식의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성 권리 인식 도구를 개 발하고 일부 여대생에게 성 권리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17문항은 예비단계를 거쳐 도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주성분 방식의 Varimax 회전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추출된 5개 요인 의 설명력은 63.3%로 도구의 적합성을 나타내었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으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 준이었다. 여성들의 성 권리 인식 중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 를 보였던 내용은 어린이나 노인들이 성인과 차별받지 않 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 출산 하지 않을 권리, 동성애가 차별받지 않고 성적으로 동등할 권리, 그리고 사회적 제도 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이었다. 일부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권리 인식 교육의 효과는 교육 전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따라서 개발된 성 권리 인식 도구는 성교육 평가에 활용 될 가치가 있으며, 성 권리 인식을 성 교육의 기초 구성요소 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추후 대표성 있는 성인 집단 을 확보하여 반복연구하고 노인, 성적 소수자, 청소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 권리 인식 도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며, 성 건강 연구에서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과 연계하여 평가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erer, M. (2004). Sexuality, rights and social justice. Reproductive Health Matters, 12, 6-11.
- Dixon-Mueller, R., Germain, A., Fredrick, B., & Bourne, K. (2009). Towards a sexual ethics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Reproductive Health Matters, 17, 111-119.
- Edwards, W. M., & Coleman, E. (2004). Defining sexual health: a descriptive overview.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3, 189-195.
- Kim, G, S. (2007). AMOS 7.0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 Na Rae Publishing.
- Korean Association for Sexology (2003). Seoul declar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exology, 1, 3.
- Korean Association for Sexology (2006). Sexual rights declaration in Valencia 1997. Retrieved July 14, 2007 from http://www. sexology.or.kr/
- Lee, E. M. (2005). Sexuality of the disability women feminist approach. The Journal of Asian Women, 44, 97-130.

- Petchesky, R. P., & Judd, K. (1998). Negotiating reproductive rights: women's perspectives across countries and cultures. Reproductive Health Matters, 6, 186-189.
- Research Forum of the Women's Health Nursing Curriculum (2006). Women's Health Nursing Care I. Seoul: Sumoonsa.
- Rickert, V. I., Sanghvi, R., & Wiemann, C. M. (2002). Is lack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and young adult women a cause for concern?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4, 178-183.
- World Association for Sexology (1999). Declaration of sexual rights. Retrieved March 10, 2007 from http://www.worldsexology.org/about_sexualrights.asp
- World Association for Sexual Health (2008). Sexual health for the millenium, A declaration and technical document, Minneapolis, MN: USA.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Working definition after WHO technical consultation on sexual health. Retrieved July 15, 2008, from http://www.who.int/reproductive-health/gender /sexualhealth.html